

II奎章閣略史

白 麟

目 次

머 릿 말	a. 高宗時代
I 奎章閣設置의 緣由	b. 隆熙時代
II 奎章閣의 組織	V 日帝下의 動向
a. 摘文院	a. 李王職圖書室
b. 奉謨堂	b. 取調局時代
c. 移安閣	c. 參事官分室時代
d. 皆有窓 및 閱古觀	d. 學務課分室時代
e. 西 庫	
f. 外閣(校書館)	VI 奎章閣圖書의 近況
g. 江都外閣	VII 整理狀況
III 奎章閣藏書	a. 日帝時代의 整理狀況
IV 韓末의 奎章閣의 動向	b. 解放後의 整理狀況

머 릿 말

韓國 書誌의 總本山이라고 말 할 수 있는 奎章閣 圖書는 어떠한 過程을 經由하여 傳來되었으며 또 同藏書의 內容的 및 形態書誌學的인 價值는 어떠한 것인지 具體的이고 實用性있는, 卽 學界나 一般 亂民자를 爲하여 滿足할 만한 目錄은 아직 完成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一般에서는 同藏書의 內容的 및 書誌學的인 價值를 考察치 않고 奎章閣의 歷史的 意義만을 들어 評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同藏書의 傳來過程을 理解치 못하고 또한 圖書 하나 하나에 對한 書誌學的 研究結果로 이루어진 圖書解題를 보지 않고서는 同藏書의 性格을 올바르게 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奎章閣圖書의 傳來에 對

한 歷史的인 考察과 그리고 그것의 具體的이면서도 實用性 있는 記述目錄이
早速히 完成되기를 期待하여 왔던 것이다.

1930 年 5 月 同藏書가 本圖書館에 移管된 以來 迅速하고 便利한 方法으로
써 利用者에게 提供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의 完全하고도 永久的인 保存管理
를 爲하여 數次에 걸쳐 그 整理가 試圖된바 있으나 目錄作成의 技術과 豫算
不足으로 成功치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1963 年 8 月 하바드大學 燕京學會의 援助에 依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의 研究助成基金中 奎章閣圖書의 整理條로 원
화 50 萬원의 補助金을 얻게되어 同藏書의 本格的인 整理에着手하여 1964 年
7 月 30 日로써 韓國本(19.708 部 73,431 冊)의 總整理의 完成을 보게 되었다.

이제 筆者는 奎章閣圖書에 對한 觀心을 喚起시키는 意味에서 極히 간단하
나마 奎章閣의 由來와 同藏書를 열람 또는 정리하기 위하여 이미 만들어진
諸種 冊子式目錄을 紹介하고 이번의 카드式 目錄이 完成되기 까지의 經過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I奎章閣設立의 緣由

奎章閣은 李氏朝鮮 第 22 代王 正祖(1776—1800)가 세운 一種의 王室圖書
館이었다.

原來 奎章이란 말은 天子의 御筆宸翰을 뜻하는 것으로 中國에 있어서 奎
章閣의 처음으로 設置된 것은 元나라 때이다. 卽 蒙古의 文宗은 天歷 2 年
(1329)에 中國的인 教養을 修得하기 위하여 大都 北京에 奎章閣을 設置하고
學問의 所로 하였든 것이 그 始初인 것이다. 文宗은 在位 5 年間에 特別한
行事가 없는限 항상 이 奎章閣(奎章閣學士院이라고도 함)에서 經書를 講讀
하고 書畫를 鑑賞하였다. 한편 經書大典의 編纂 및 中國書籍의 蒙古語翻譯
事業도 여기서 行하였으며 蒙古의 貴族子弟의 教育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특히 文宗이 高麗 忠惠王에게 國印을 授與하는 儀式도 이 奎章閣에서 舉行
되었다. 이 奎章閣은 다음 王인 順帝時代에 文宣閣이라 改稱되어 存續되어

오다가 그 후 얼마아니하여 罷止되고 말았다.

그런데 奎章閣의 設置問題가 우리나라에서 最初에 論議된 것은 李朝 第 7 代王 世祖 9 年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言에 비롯한 것이다. 그는

……乞令臣等勘進御製詩文，奉安于麟趾堂東別室，名曰奎章閣，又諸書所藏內閣，名曰秘書閣，皆置大提學提學直閣應敎等官，堂上以他官帶之 卽廳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이라 하여 奎章閣과 秘書閣의 設置를 建議하였던 것이나 世祖는

若立崇文館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專事述作者，不可從也，以藏書閣爲弘文館則可其設 兼官大提學一 提學一 直提學一 直閣一 博士一 著作郎一正字二

라하여 奎章閣(崇文館)의 設置는 不許하고 弘文館(秘書閣)의 設置만을 許可하였던 것이다. 그후 第 19 代王 肅宗 20 年(1764)에 이르러 비로소 梁誠之가 建議한 奎章閣 設置의 問題가 그 實現을 보게된 셈인데 卽 王은 宗簿寺(璿源譜牒을 撰錄하며 宗室의 憲違를 紛察하는 任務를 맡은 官衙)에 小閣을 別建하여 歷代王의 御製 御筆을 奉安하고 肅宗의 親筆로서 「奎章閣」이란 扁額을 써서 걸었다. 그러나 그 規模는 적었고 職制도 없이 그 管理에 關한 事務는 宗簿寺에 屬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御製 御筆을 모셔둔 一閣의 祠堂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다.

李朝 第 22 代王 正祖(1776—1800)는 그 卽位年 7 月에 宋朝의 龍圖閣의 制度에 따라 昌德宮 北苑(秘苑)에 奎章閣을 建立하고 歷代王의 御製 御筆의 奉安과 함께 王室諸書를 收集儲藏하고 6 名의 閣臣을 두어 이를 管理케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奎章閣이다.

正祖는 英祖의 世孫으로서 歷代王들 中에서도 보기드문 聖君이었다. 그는 어려서 부터 學問을 즐겨 하였으며 藏書家로서 東宮時부터 藏書蒐集에 热中하여 中國藏書家의 遺藏을 探聞하여 購入하는데 더욱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慶熙宮(現 서울中高等學校터) 尊賢閣에 많은 書籍을 儲藏하고 이를 貞蹟堂이라하여 自己의 書齋로 하였다. 이와 같은 正祖의 藏書蒐集家로서의 素癖은 그로 하여금 奎章閣을 設立케 한 하나의 重要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奎章閣 設置目的에서 「當時選才學之臣 責一代文明之治」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正祖이 治道의 理念은 從來와 같아 儒教思想이 있으나 그는 한 거름 더 나가서 國內의 俊才를 뽑아 學問을 研究케 하여 그 理論을 政治에 反影시킴으로써 새로운 政治風土를 造成하기 위한 機構로서 設置한 것이 또한 奎章閣이라 하겠다.

그리고 正祖 東宮時의 事情을 살펴 보면 그는 극히 不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오래도록 계속되여 온 老小論의 黨爭과 外戚의 발호는 政治를 어지럽혀 왔던 것이다. 거기에 英祖 38 年의 宣仁門事變은 正祖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이다.

이제 正祖가 登極하기 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祖父인 英祖는 正妃 貞聖王后 徐氏와 繼妃 貞純王后 金氏께서는 不幸하게도 嗣子를 보지 못하였고 後宮인 靖嬪李氏의 所生인 孝章世子(追贈眞宗)는 英祖 4 年에 昌慶宮內 進修堂에서 升遐하였고, 後宮 嫢嬪李氏 所生인 思悼世子가 英祖 11 年에 誕生하여 英祖 12 年에 王世子로 冊封되어 15 歲時부터는 政事를 代理하였다. 그러나 그는 宮中의 謀略으로 父王의 미움을 받아 오다가 英祖 38 年 閏 5 月 20 日에 두주속에 넣어 悲慘한 죽임을 당하였다. 正祖는 英祖 28 年(1752)에 誕生하였다. 그러니까 父親인 思悼世子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는 10 歲의 小年이었다. 그러나 父親의 죽임의 情景을 目擊하였으니 당시의 事情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正祖는 英祖 52 年(1776)에 �即位하였다. 그는 父親 思悼世子의 謚號를 追贈하여 「莊獻」世子라 하고 墓는 顯隆園 廟는 景慕宮이라 하였다. 그리고 思悼世子는 謀略하는 徒輩들을 漸次로 肅清하기 始作하여 主謀者였던 文昭儀(英祖의 後宮) 洪麟漢(洪鳳漢의 아우) 鄭厚謙 等을 賜死하고 和緩翁主(英祖의 第9女)는 江華로 귀양을 보내고 宣仁門의 變(思悼世子가 變을 當한 곳)의 魁首인 洪鳳漢만큼은 正祖의 外祖父이었으므로 罪를 줄 수가 없어서 公職에서만 물러나게 하였다.

正祖는 10 歲에 죽은 孝章世子를 追尊하여 眞宗의 謚號를 주면서 自己의 父親인 思悼世子를 追尊하여 王으로 하지 못한 것은 英祖의 思悼世子를 追尊치 말라는 遺教가 있은 까닭이다. 王家の 法上 先王의 遺訓은 엄격히 遵

守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表面上으로는 先王의 遺訓을 遵守하여야 했기 때문에 于先英祖가 昇遐한 뒤에 先王의 御製 御筆 卷帙 浩翰을 奉安할 새로운 閣의 設立을 構想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先王의 編次人 具允明 蔡濟恭 等으로 하여금 史局을 열게 하고 先王의 御製를 鎏梓(板木에 새기는 것) 켜하고 御墨을 刻石하였으며 御製로서 中外에 散在하여 아직 鎏梓치 못한 것은 二本을 謄寫시켜서 하나는 陵寢(陵墓)에 다른 하나는 大內의 別殿에 각각 奉藏하고 처음 이를 御製閣이라 하였다.

그후 얼마 아니하여 正祖는 卽位를 前後한 政局의 混亂을 收拾함과 同時에 앞서부터 構想하여 오던 政治의 革新과 學問의 發展을 위한 큰 事業으로서 第一 먼저着手한 것이 奎章閣의 設立이라 하겠다.

奎章閣의 本閣인 宙合樓는 正祖即位年 7月에 竣工되었다. 本閣의 南쪽 両 설주엔 지금도 「宙合樓」라는 扁額이 걸려 있다.

奎章閣의 職制를 宋朝의 龍圖閣學士의 制에 따라서 定한 것은 卽位年 9月이다. 閣臣의 職階는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敎로 하고 提學에는 黃景源과 李福源을 直提學에는 洪國榮과 俞彥鎬를 각각 任命하였다. 이로써 奎章閣은 規模와 職制를 가준 하나의 獨立한 機構로서 發足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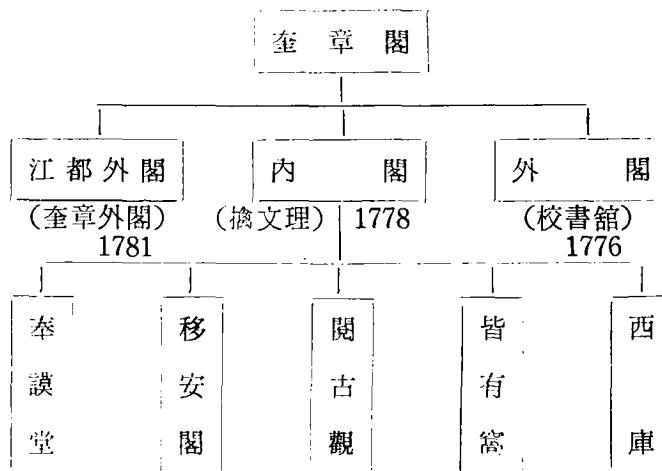
II 奎章閣의 組織

奎章閣은 内閣과 外閣의 制로 構成되어 있었다. 内閣에는 摯文院, 奉謨堂 移安閣(一名 書香閣) 閣古觀, 皆有窩 西庫等의 附屬施設이 있었고 摯文院을 除外한 이들 建物은 보다 秘苑內의 宙合樓(本閣)를 中心으로하여 모여 있었다. 그리고 外閣으로는 校書館과 江都外閣이 있었는 데 奎章閣의 組織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11 페이지 參照)

a. 摯文院

摛文院은 奎章閣의 事務廳으로 昌德宮 金虎門內 舊都總府의 廳舍를 使用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主로 御眞 御製 御筆 璞源譜牒의 撰錄 奉安에 關한 事項, 日省錄 및 内閣日曆의 編纂, 書籍의 收集 整理 및 圖書의 出納에 關

奎章閣組織圖表



한 事務를 取扱하였으며, 閣臣들이 豪直(長期宿直)을 하는 곳이 었으며 「奎章閣學士之署」이었다. 그러므로 摛文院은 奎章閣을 代表하는 本院이라 하겠다.

廳舍의 前檻에는 永樂鍾을 달아놓아 時間과 有事を 알리게 하였으며 投壺와 琴瑟을 下賜하여 閣臣의 피로를 덜게하였다. 그리고 廳樑에는 6個의 玉燈을 달어 밤에도 휘황하게 장식하였고 끝앞에는 測雨器를 設置하였다. 이와같이 閣臣들이 讀書와 研究에 專念하며 不便 없이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設備되어 있었다.

b. 奉謨堂

奉謨堂은 宙合樓의 西南쪽에 位置하였으며, 여기에는 列朝의 御製, 御筆, 顧命, 遺誥, 密敍, 璞源譜牒 等을 奉安했었다. 本來 이 奉謨堂은 英祖의 御製, 御筆을 奉安할 目的으로 建立한 것인데 正祖 9年에 珍藏閣에 奉安하였던 것을 여기로 移安하였고 그후 이것이 협소하여 哲宗 7年에 昌德宮 景秋內에 移建하여 現在까지 奉安되어오고 있는바 總件數는 6,463 件이다.

c. 移安閣

移安閣은 本來 書香閣이라 하였는데 여기는 御眞 御筆等을 옮겨다 曝晒하던 곳이 었으므로 移安閣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建物은 宙合樓의 西쪽에 位置하며 넓이가 六間으로 左右에 房이 있다. 후에 와서는 여기에도 國朝寶鑑, 璞源譜略, 御製集 等을 奉藏하였는 바 書香閣奉安總目에 의하면 總數

는 碑文 簥子 4 件, 冊文 26 種 外에 御製集 163 種 1,705 冊이다.

d. 皆有窩 및 閱古觀

閱古觀과 皆有窩는 奎章閣의 藏書庫로서 여기에는 中國本을 藏置했었다.

閱古觀은 上下二層으로 되어 있고 皆有窩는 單層으로 軒一間과 煖房二間으로서 L字形의 同一建物이었다.

i) 建物은 6·25動亂時에 燒失되었으며 거기에 收藏되었던 圖書는 現奎章閣圖書의 中國本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바 正祖 8年 徐浩修에 의하여 編纂된 「奎章總目 皆有窩書 4 卷 3 冊에 의하면 總 19,652 冊이다.

e. 西 庫

西庫는 本閣의 西北便에 있었음으로 이를 「西序」라고도 불렀다. 여기에는 主로 韓國本을 收藏하였던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關心을 갖게하나 不幸히도 「奎章閣總目中의 一部인 西序書目二冊」이 逸失되어 그 當時의 藏書內容을 알 수 없음이 遺憾이다. 그러나 高宗年間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되는 「西庫藏書錄一冊」이 現存하는 바 이에 의하면 藏書 總 1,367 部 20,663 冊이다.

f. 外閣(校書館)

校書館은 一名 芸閣이라 하여 高麗 以來 書籍의 印刷頒布와 香祝 印篆 等에 關한 일을 맡아 보던 官衙이었다. 그후 奎章閣이 設置됨에 따라 正祖元年(1776) 12月에 奎章閣의 屬司로 된 것이다.

g. 江都外閣

正祖 5年(1781) 3月 當時의 江華留守인 徐浩修에게 命하여 江都行宮의 長寧殿 西便에 있었던 燕超軒을 撤去하고 그 자리에 外奎章閣을 建立케 하였는바 다음해 2月 竣工 되었다. 그리하여 行宮의 別庫에 秘藏되었던 書籍을 移藏하는 한편 本閣의 西庫 및 奉謨堂으로부터 重複되는 書籍을 골라 移置하였다. 그 後에도 書籍이 刊行될 때마다 내려다 두었고 隨時로 檢書官을 派遣하여 曝晒點檢케 하였으니 그 報告書가 곧 外奎章閣形止案인 것이다.

江都外閣에 收藏되었던 圖書의 內容은 여기서 하나하나 밝힐 수 있으나 正祖 8年 檢書官 李德懋의 調査에 의하면 所藏件數 總 1255 冊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收藏되었던 記錄 및 書籍은 高宗 3年(1866)의 丙寅洋擾

時에 프랑스 軍隊에 의하여 一部 重要文獻은 掠奪되고 나머지는 同行宮과 함께 燃失되고 말았다.

III 奎章閣藏書

正祖는 奎章閣의 設立과 同時에 東宮時에 가지고 있던 慶熙宮內의 貞贊堂의 藏書를 옮기는 한편 弘文館의 藏書와 江華行宮의 藏書인 明나라에서 보내온 書籍을 移藏하고 또 北京으로 부터 圖書集成 5022 冊을 購入하여 奎章閣의 藏書로 하였다. 圖書의 分類에는 四部分類法을 使用하였으며 圖書箋은 四部裝縲法에 따라 經部는 紅色, 史部는 靑色, 子部는 黃色, 集部는 白色, 等으로 그 色갈을 달리하여 區別하였다. 그리고 書籍은 清나라의 四庫全書館과 같이 經部는 甲庫, 史部는 乙庫, 子部는 丙庫, 集部는 丁庫에, 각각 區別 配列하였다.

奎章閣藏書의 整理가 完了된 것은 正祖 5 年이다. 그리하여 徐浩修에 命하여 奎章閣總目을 編纂케 하였는 바 閱古觀書目 6 卷(그후 正寫하여 皆有寫書目 4 卷 3 冊으로 改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西序書目 2 卷이 그것이다.

奎章閣의 圖書는 王은 勿論 閣臣과 文衡들도 自由로 貸出 閱覽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闕내에 限해서만 許容 되고 外部持出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借出時에는 象牙로 만든 「請出牌」에 書名과 借出者的 姓名을 記入하여 이것을 摺文院에 備付하고 冊을 내다 보게 하였으니 이와같은 圖書貸出方式은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많이 發展된 制度라고 하겠다.

IV 韓末의 奎章閣의 動向

a. 高宗時代

내려와 高宗 1 年 甲子(1864)에 이르러 宗親府가 新設됨에 따라 從來의 宗簿寺는 이에 合併되고, 同時에 奎章閣의 制度도 改編되어 王室의 典籍을 保管하는 任務를 뛴 内閣과, 御製御筆을 奉安하는 奎章閣이 둘로 分離되었다.

그리하여 同王 4 年에 景福宮 重建이 完役되고 또한 宗親府의 廳舍도 新建되자 奎章閣은 同廳舍內로 옮겼고, 内閣과 外閣은 함께 景福宮의 道秋門內로 移轉하였다. 宗親府 當時에 奎章閣에 收藏되었던 重要한 圖書는 列聖의 御製御筆以外에 璞源譜略, 國朝御牒, 列聖祖 및 八高祖圖粧帖, 大妃世譜, 璞源錄, 璞源加現錄 等이다.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關係書類 (三) 奎章閣 沿革資料 參考)

그리고 内閣의 移轉에 對하여는, 小田省吾氏의 말에 依하면 「本閣의 廳舍는 景福宮 西側인 道秋門內에 있었으며 2 翰이었다. 그에는 附屬된 二層建物의 書庫 2 棟이 있었다. 그中 하나는 大西齋 및 聚奎樓의 遍額을 걸었고 間數는 38 間, 上層에는 中國出版의 書籍을 藏하고 下層에는 韓國出版의 圖書를 藏하였다. 다른 1 棟은 東二樓라하여 間數는 12 間으로 冊寶文 編編, 日省錄을 藏하였는바 藏書의 總數는 三萬餘冊이였다」한다. (舊奎章閣本と其の沿革, 小田省吾, 靑丘學叢 第二十三號)

그런데 「景福宮地圖」에서 보면 慶會樓 西南便에 内閣과 檢書廳 建物이 따로 있고 内閣 後側에 聚奎樓가 있다. (王宮史 李哲源 著 서울 東國文化史 4287 年 參照)

어쨌던 從來의 摄文院(内閣)이 이리로 옮겨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후 同王 31 年 甲午(1894) 改革의 結果로 宮內府가 新設되면서 同府의 屬司로서 奎章閣의 制度가 復活되었다. 그리고 同年 11 月 1 日(宮內府布達 第五號)에는 奎章院으로 改稱되었다. 그리하여 王室의 典籍 및 記錄을 保管하며, 列聖의 御製 御筆과 御眞을 奉安하며, 王統譜와 王族牒籍을 管掌하는 것을 任務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奎章院의 長을 嘴이라 하고, 記錄 및 奉閣의 2 課로 分하여 直學士 1 人(奏任), 校書 2 人(判任), 主事 4 人(判任)의 職員을 두어 所管事務를 맡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 光武 9 年 3 月 4 日(布達 第126 號)에 職制를 改正하면서 奎章院을 다시 奎章閣이라 하고 그 長을 學士라 하였다. 그리고 그밑에 直學士 1 人(奏任) 直閣 1 人(奏任) 待制 1 人(奏任) 主事 2 人(判任) (後에 書記로됨)의 職員을 두었다.

隆熙元年(1907) 11月 29日 布達 第161號로서 奎章閣의 職制가 다시 改正되어 從來의 奉常寺, 宗簿司, 弘文館 等이 廢止되고 그 所管事務가 모두 이에 移管되면서 奎章閣은 帝室의 典籍 文翰記錄을 保管하며 列聖의 御製, 御章, 御眞과 璞源譜牒 및 進講代撰 그리고 宗室에 關한 全般的인 事務와 議謚祭典에도 參例하는 等 그의 機能은 大幅 擴大되었다. 그리고 職員도 大提學 1人(勅任 名譽官), 提學 10人 以內(勅任, 名譽官), 副提學 10人 以內(勅任 或奏任 名譽官), 直閣 10人 以內(奏任 名譽官), 祇候官 10人(勅任 名譽官), 卿 1人(勅任), 記注官 2人(勅任 或奏任) 典製官 2人(勅任 或奏任), 主事 4人(判任)으로 하였다. 그런데 大提學에서부터 直閣까지는 名譽官으로하고 그들은 侍講 代撰을 掌理하며 議謚祭典에 參列하는 것을 任務로 하였으며, 祇候官도 名譽官이나 이들은 閣務의 顧問에 應하였고, 閣務를 總理하며 職員을 監督하는 卿이 實際 奎章閣의 長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奉謨堂(哲宗 7年 12月 昌德宮 景秋門內로 移建됨), 經板閣의 經籍의 古板木 및 鑄字와, 北漢山行宮의 藏書(一名 京畿史庫)가 이에 移屬되었다.當時에 調查報告된 바에 의하면 本閣, 奉謨堂, 北漢山行宮의 圖書 記錄을 合한 것이 4萬 4千卷이 었다고 한다.

b. 隆熙時代

隆熙 2年 9月에는 奎章閣의 職制를 다시 改正하여 典謨, 圖書, 記錄, 文書의 四課로 한 分課制로 實施하여 事務을 分掌케 하였다. 同年 9月 20日 字로서 制定된 分課規定은 다음과 같다.

第1條 奎章閣에 左記 四課를 置함

第2條 典謨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璞源譜牒과 敦寧譜牒의 編纂修正 及 保管에 關한 事項
2. 列聖御製, 御筆, 御章及 御眞의 圖寫及 祭典參列에 關한 事項

第3條 圖書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圖書保管及 出納에 關한 事項
2. 圖書整理及 分類에 關한 事項

3. 圖書購買, 繕寫에 關한 事項

4. 圖書原版保管에 關한 事項

第 4 條 記錄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公文書類의 編纂及 保管에 關한 事項

2. 公文書類의 整理及 分類에 關한 事項

3. 縱綺, 日省錄‘上奏文, 儀軌冊文及 簥子尙藏에 關한 事項

4. 史庫에 關한 事項

第 5 條 文書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進譜及 代撰에 關한 事項

2. 尊號及 謂號에 關한 事項

3. 縱綺及 日省錄 編纂에 關한 事項

4. 史冊의 起草及 修正에 關한 事項

5. 他課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附　　則

第 6 條 本規程은 隆熙 2 年 9 月 25 日부터 施行함.

위의 規定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奎章閣의 機能과 그 所管事務가 擴大되면서 承政院日記, 備局謄錄과 기타 各官衙의 日記, 謄錄類 等이 奎章閣에 옮겨졌고, 또한 江華島 鼎足山, 奉化 太白山, 平昌 五臺山, 茂州 赤裳山 等의 各史庫에 關한 事項이 이에 移管되었다.

奎章閣의 各課는 舊 宗親府의 廳舍에 모이게되고 이를 契機로하여 圖書課에서는 皇室圖書館을 세울 計劃으로 앞서 景福宮內에 移轉되었던 內閣과, 弘文館, 集玉齋, 春坊, 北漢山行宮 等에 所藏되었던 圖書記錄을 奎章閣에서 收集하였던 것이다.

V 合併後 奎藏閣藏書의 變遷

a. 李王職圖書室

隆熙 4 年(1910) 8 月 29 日 合併條約이 締結되고, 日帝는 卽時 韓國에 그

들의 統治機關으로서 總督府를 設置하였다. 이와 同時에 宮內府 奎章閣은 廢止되고 同年 12月 皇室令 第34號로써 代身 李王職官制가 制定되었다. 그리하여 李王職에서는 臨時圖書室을 두고 從來의 帝室圖書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11年 6月에 奎章閣圖書는 모두 總督府取調局에 依하여 引受되었다. 李王職은 처음에 이 圖書의 引繼를 拒絕하였고 移管된 뒤에도 數次에 걸쳐 同 圖書의 返還을 要求한 바 있다. 그리하여 政務總監 山縣는 明治44年 6月 24日字 朝乙發 第5594號로서 江華史庫 및 北漢山行宮本中에서 重複本을 골라 둘려 줄것을 取調局長에게 指示하였으나 取調局에서는 그 分別이 困難하다는 理由를 들어 이를 拒絕하고 말았다. 그 後 史庫整理時에 江華島 鼎足山 史庫本, 奉化 太白山·史庫本 및 平昌 五臺山 史庫本은 國有로 하고 赤裳山 史庫本만은 李王職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李王職圖書室의 藏書는 이 赤裳山 史庫本을 中心으로 하여 다시 收集된 것이니 小田省吾氏에 依하면 「開國 503年 甲午改革時 京城에 있었던 諸軍營은 모다 廢止되었으나 開國 506年(光武元年)에 이르러 九衛隊(皇帝의 輩輿에 隨行하는 軍隊를 統率하는 軍衛로서 그 位置는 舊宗親府의 南側 現首都陸軍病院에 該當)라는 軍營이 宮內府의 所管으로 設置되면서부터 이미 廢止되었던 各 軍營의 圖書記錄은 이를 奎章閣에 移管하였던 것이나 어찌된 일인지 이 圖書記錄은 宮內部로 부터 取調局에 引繼되지 않고 李王職에 殘存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當時 李王職 藏書의 重要部分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王職藏書閣 古書目錄」에 收錄된 軍營關係圖書를 보면 御營廳臘錄類 6部 11冊, 捷戒廳臘錄類 4部 9冊, 捷禦營臘錄類 1部 9冊, 親軍別營臘錄類 1部 186冊이다. 그러나 取調局引繼書類에 何等 이에 關한 根據가 될만한 書類가 보이지 않으며 또 現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는 奎章閣 圖書中에도 軍營關係의 圖書가 包含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取調局에 引繼할 當時 軍營關係의 記錄만은 除外하고 引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以外에 1911年(明治44年 2月 1日 李王職이 設置된 後 同年 6月 1日 奎章閣

圖書가 取調局에 引繼될 때 까지 李王職에서 購入한 圖書 3,528 冊과 全羅北道 茂州郡 赤裳山史庫 및 璞源閣에 奉安되었던 圖書 4,060 冊이 李王職에 引渡되어 所謂 李王職藏書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b. 取調局 時代

隆熙 4 年 8 月 韓日合併과 함께 奎章閣 保管의 圖書는 全部를 朝鮮總督의 所管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皇室圖書館을 新設하려는 計劃은 水泡로 돌아갔고 翌年 2 月 1 日 李王職官制의 公布와 함께 從來의 奎章閣은 廢止 되었다. 李王職에서는 圖書室을 두고 잠시 同圖書를 管理케 하였다가 同年 6 月 1 日字로 圖書와 기타 一切를 朝鮮總督取調局에 引繼하였던 것이다.

當時 取調局에 移管된 圖書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書課 保管冊數

部數	2771 部
外散秩本	1582 部
冊數	81525 冊
外散秩本	20,940 冊
合 計	5,353 部 100,187 冊

記錄課 保管記錄數

冊數	11,730 冊
鑄字	653,921
	71 盆
板本	9,501 枚
附屬品	12 種
御製 及 御筆刻板	417 枚
手帖本刻板	53 枚
額	24 枚

取調局은 李王職으로 부터 引受한 圖書를 收藏할 곳이 없어서 從來 奎章閣 圖書課에서 使用하던 舊宗親府의 建物을 使用하고 그래도 書庫가 不足하

여 昌慶宮內에 藏書閣을 짓고 남은 벽돌을 가져다가 舊宗親府內에 二層書庫를 新築하고 이를 本庫라 하였다. 그리고 朝鮮式建物인 在來의 書庫를 東西南北의 四庫로 定하고 其他의 建物을 別庫라 假稱하였던 것이다.

本庫의 四層에는 韓國本을 收藏하고 下層에는 實錄 系譜 日記 等을 整理하여 藏置하였다. 東南北의 三庫에는 唐版本(中國本)을 藏置하고, 西庫에는 儀軌類를 藏置하였다. 그리고 引受한 圖書中 餘部가 많은것, 散佚 或은 缺損된 韓國本 및 唐版本은 따로 別庫에 藏置하였던 것이다.

圖書의 配列方法은 四庫全書의 區別에 따라 經 史 字 集의 四部로 우선 大別하고 그중 版種이 善美하고 完全한 것은 正本으로 하고 其他는 副本으로 하였으니 當時에 만들어진 所謂 朝鮮本索引에 [正]字로 表示되어 있는 것이 곧 正本임을 뜻한 것이다.

c. 參事官分室時代

取調局은 設置된지 不過 1年만에 廢局되고 1912年(明治四十五年) 4月 1日 總督府官制의 改正으로 參事官室이 設置되었다. 그리하여 앞서 取調局에서 取扱하여 오던 調查事務一切와 同局에 依하여 接受된 書籍은 全部 參事官의 所管으로 移管되었다.

參事官室은 取調局으로 부터 圖書를 引受한 것을 契機로 舊宗親府의 廳舍를 同分室로 하고 奎章閣圖書의 整理와 함께 調查事務에着手하였던 것이다.

當時에 移管된 圖書에 對하여서는 詳細한 記錄이 없어 그 内容을 알 수 없으나 參事官分室書類(一)의 大正 3年 5月 1日 「各 事務의 經過報告書」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參事官分室時代의 總冊數

韓國本	12,887 冊
	69,705 冊
中國本	5,803 冊
	78,382 冊
計	18,690 冊
	148,087 冊

内譯

在來의 分	16,714 部
	137,532 冊
新購入 및 謄寫한것	153 部
	606 冊
寄附받은 것	8 部
	36 冊
太白山 史庫本	1,216 部
	5,777 冊
五台山 史庫本	599 部
	4,136 冊
總務課 引繼分	151 部
	583 冊

參事官分室에서는 上記 圖書를 引受하여 이를 整理하는 한편 韓國에 關한
考事資料의 菁集에 着手하였다. 菁集種目으로는 朝鮮金石文 朝鮮圖書 朝鮮
各郡邑誌 古文書 冊板 及 參考品 等이 었다. 金石文에 對하여는 各道에 通
牒하여 拓本 또는 寫本을 만들어 送付하게 하는 한편 職員도 直接 出張하게
하여 菁集에 努力하 結果 다음과 같은 菁集物을 加藏하기에 이른 것이다.

新羅期	29 種	拓本	28 種
		寫本	1 種
高麗期	87 種	拓本	28 種
		寫本	29 種
朝鮮期	932 種	拓本	491 種
		寫本	441 種

韓國圖書의 菁集에 있어서도 參事官分室에서 保管整理 中에 있는 韓國本
以外의 것을 各道에 通牒하여 買入 或은 借入謄寫한 것이 59 種 691 冊이 었
으며 特히 邑誌는 959 種을 菁集하였던 바 이로서 全國 邑誌가 完備된 것
이다.

參事官分室은 取調局으로 부터 引繼된 舊宮內府 奎章閣 圖書課 所管이었던奎章閣藏書 弘文館 集玉齋 春坊의 諸藏書와 記錄課 所管이었던 各史庫에 藏置되어 있던 李朝實錄을 為始한 諸書籍 舊韓國 度支部에 依하여收集된 各宮의 記錄 그리고 그 以後 參事官分室 自體에서 菁集 或은 寫本한 것 等을 一括하여 이것을 便宜上 奎章閣圖書라고 名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奎章閣圖書가 本格的으로 整理된 것이 參事官分室時代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參事官分室에서는 모든 圖書를 編著者에 依하여 우선 韓國本과 中國本으로 大別하고 이를 四庫全書의 分類法에 依據하여 分類하여 類別假目錄을 作成하였다. 그리고 圖書에는 함부로 「朝鮮總督府」의 朱印을 찍었으며 圖書番號 카드番號 書架番號 等을 表示한 所謂「番號紙」를 貼付하였다. 現在도 그當時에 定한奎章閣圖書番號에 依하여 書籍이 出納되고 있는 것이다.

d. 學務課分室時代

1919年(大正8年)8月 19日에 朝鮮總督府官制가 改正됨에 따라 從來 內務部에 附屬되어 있었던 學務局이 獨立된 機構로 되었다.

그 後 參事官分室에서 保管整理하여 오던 所謂奎章閣圖書는 學務局의 所管으로 옮겨졌던 바 小田省吾氏에 依하여 「大正十一年(1922)十一月 參事官分室로 부터 同部 學務局所管으로 옮겨졌으며 學務課分室로서 該圖書 全部를 舊位置 卽 舊宗親府의 廳舍에서 保管整理의 責任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以後 昭和5年까지 十年間 이 圖書는 學務課分室에서 保管하여 왔던 것이다.

VII. 奎章閣圖書의 近況

1923年(大正十三年)에 京城帝國大學(現 서울大學校)이 創立되고 1930年에 同大學附屬圖書館이 新築되자 總督府學務局學務課分室에서 保存管理하여 오던奎章閣圖書는 그 全部가 京城帝大圖書館에 移管되었다.

當時 移管된 圖書의 總冊數에 對하여 小田省吾氏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移管圖書總冊數 136,038 冊

內 譯

朝鮮本	73,396 冊
普通本	45,607 冊
特別本	27,789 冊
中國本	62,642 冊

그러나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閱覽案내에 記錄된 冊數는 136,141 冊이다.

筆者가 보건데 이 兩記錄은 모다 正確한 調査에 依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의 圖書出納簿에 依하면 當時 奎章閣圖書는 前後 3次에 걸쳐 移管된 것으로 되어 있다.

即 第1次는 1929年(昭和3年)10月 29日로서 9,551 冊이 移管되었고, 第2次는 1930年(昭和5年)5月 28日에 15,930 冊, 第3次는 同年 10月 29日에 136,038 冊이 각각 移管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學務課分室로 부터 移管된 總冊數는 151,519 冊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前記한 移管圖書中 第1次 및 第2次에 移管된 것은 그 大部分이 所謂 唐版本으로서 이는 一般 東洋圖書와 함께 分類整理되었고, 第3次에 移管된 것 중에서 增補文獻備考 7,854 冊을 除外한 나머지 128,184 冊만이 事實上 別置되어 現在 奎章閣圖書로서 特別 取扱되고 있는 것이다.

奎章閣圖書가 同大學에 保管轉換된 것은 圖書解題作成을 從來와 같이 繼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發行하여 關係方面에 配布하고 閱覽者의 便宜를 圖謀한다는 約束下에 引受한 것이다.

그 後 同大學圖書館에서는 奎章閣圖書整理計劃을 세워 分類는 一般圖書와 같이 하고 카드 目錄을 作成하는 한편 精密한 解題를 하여 印刷目錄을 編纂刊行할 計劃이었던 것이다. 同計劃書에 依하면 奎章閣圖書 總 128,184 冊에 對하여 滿 11年 11個月에 걸쳐 그 解題를 完了하고 1948年 即 昭和23年에 그 印刷目錄을 刊行할 豫定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長時日을 要하는 巨大한 事業이었던 것이므로 當時에는 計劃뿐

으로 그事業은 成就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6.25 動亂中에奎章閣圖書가 어떻게保存되었던가 이에對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므로 釜山에疎開한 經緯를 밝혀 두겠다.

1950年12月10日當時의館長이었던李丙燾博士의指揮下에筆者는承政院日記3045冊을第1次로疎開하였고, 第2次로同年12月23일當時서울大學校附屬病院長이었던金斗鍾博士에의하여李朝歷代王의實錄(江華本)1,188冊과日省錄2,329冊이疎開되었으며第3次로서同年12月28일當時法科大學司書이었던扈基顯氏에의하여實錄(太白山本)864冊과備邊司臘錄冊이疎開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圖書는疎開할事情이못되어本館書庫에그대로남겨두고釜山에내려갔던 것이다.

그후 1953年8月 서울收復과 함께 釜山에疎開하였던前記圖書를 올려왔으며 또書庫에남겨두었던奎章閣圖書도多幸히그대로保存되기에이른 것이다.

이제奎章閣圖書의形成過程을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77年奎章閣藏書構成

奉漢堂	移安閣	皆有窩	閱古觀	西庫	江華外閣
↓ 6463	↓ 未詳		↓ 19,652	↓ 20,663	↓ 約500

1907年弘文館	集玉齋	春坊	北漢山行宮
4,252	39,817	20,116	7,936

韓末奎章閣圖書課所收藏書

總計 5,493部 103,680冊 ←

1911年總督府取調局引受 ↓

圖書課分 523部 100,187冊

記錄課分 11,730冊

計 111,917冊

1912年參事官分室引受 ↓

韓國本	12,887 部	69705 冊	太白山本	1216 部	5,777 冊
中國本	5,803 部	78392 冊	五台山本	599 部	4,136 冊
計	18,690 部	148087 冊	江華本	約	5000 冊
1922 年	京城帝附屬圖書館大				
1 次 移管	2,074 部	9,553 冊	—	640 部	12,794 冊 은 東洋書 轉管 轉換
2 次 移管	1,089 部	15,970 冊	—		
3 次 移管	13,471 部	128,174 冊	殘餘 : 3,520 部	12,729 冊	
現在數	—	—	—	—	—
	16,991 部	140,913 冊 (但 이 數中에는 未詳分 141 部 312 冊이 包含됨)			

以上에서 奎章閣圖書의 形成過程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整理를 爲한 過程의 概略을 적어 보겠다.

VII 整理狀況

a. 日帝時代의 整理狀況

① 奎章閣圖書, 朝鮮本, 6 冊 謄寫版

이 目錄은 參事官分室時代에 朝鮮總督府에서 만든 것으로 推測된다. 이것은 奎章閣圖書의 一連 番號 順으로 作成되어 있으며 同 目錄中 넷째卷도 貴重本이고 (12,719—15,150, 計 2,243 部 16,744 冊) 第 6 卷은 特別本인 바 量案 謄錄類 等이다. 總 2,044 部 8,698 冊이다(圖書番號 17641~19684). 그런데 이 冊은 6 卷으로 되어 있고 卷別로 실려 있는 圖書의 部數, 冊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 卷	4,008 部	15,885 冊
第 2 卷	3,695 部	13,561 冊
第 3 卷	3,155 部	7,831 冊
第 4 卷	2,243 部	16,744 冊 (貴重本)
第 5 卷	1,476 部	2,246 冊
第 6 卷	2,044 部	8,698 冊 (特別本)
總 計	16,621 部	64,965 冊

② 朝鮮圖書部類目錄, 朝鮮總督府 5 冊 謄寫版

이 目錄은 奎章閣圖書가 參事官分室에 移管된 뒤 即 大正 6 年(1917) 頃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적되는 바 經史子集으로 大別되어 史部만은 上下 2 冊이고 다른것은 各一冊이다. 各部 아래는 各各 類別 細分하였고 書名, 著者, 冊數, 圖書番號 等이 記載되어 있으며 備考欄에 移管한 것을 明示하였다.

編者年時 版種, 出版年時 等도 調査 記入할豫定이었던 것 같으나 다만 版種에서 版本, 寫本만을 區別하다가 그것도 몇 卷 못하고 斷念하고 말았다. 또 欄外에 正本, 複本을 表示하였다.

(3) 奎章閣圖書原簿, 2 冊, 朝鮮本 支那本

本臺帳에 現在高是 現品과 對查한 뒤에 引繼한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大正 6 年 10 月 1 日

前任 物品會計官吏……中島伊十郎

後任 物品會計官吏……瀧口亮造

그리고 同臺帳에 拂出된 圖書의 番號, 圖書名, 冊數, 舊冊負 等이 記入되어 있으므로 이 目錄에 依하여 奎章閣 圖書가 日帝時에 寄贈乃至 保管 轉換된 事由를 알수 있다.

(4) 奎章閣 圖書(中國本) 索引, 朝鮮總督府, 1 冊, 謄寫版

이 目錄은 學務課分室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日本 五十音字順 目錄이다. 書名, 編著者名, 圖書番號, 備考에 移管된 事由가 記載되어 있다. 또 앞에 五十音字로 된 漢字索引이 있다.

(5) 奎章閣 圖書(朝鮮本) 索引 1 冊, 謄寫版

이 目錄은 中國本索引과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 著錄體裁는 同一하다.

(6)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 冊

이 冊은 大正 8 年(1919) 3 月에 만들어진 것으로 總 1,121 種의 書名, 著者, 卷數, 冊數 圖書番號 및 간단한 解說을 兼한 目錄이다.

(7)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 冊

이 冊은 昭和 7 年(1932) 8 月에 만들어진 것으로 위의 것과 같은 内容이긴 하나 圖書番號를 記載하지 않았으며 朝鮮通信社에서 發行한 것이다.

(8) 朝鮮圖書解題. 朝鮮語研究會. 1 冊

이 冊은 朝鮮語研究會 編으로 昭和 19 年(1943)에 上記한 冊을 民衆時論社에서 再版 發行한 것이다.

(9)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朝鮮總督府 316 p

大正 10 年(1921)에 만든 經. 史. 子. 集別 部類目錄이며, 書名. 卷冊數. 編著年時. 圖書番號를 記錄하였으며 寫本과 印本을 區別하고 奎章閣 圖書가 學務課分室에 移管된 뒤에 增加分을 包含한 것이다.

(10)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補遺 1 冊. 西紀 1934 年

奎章閣 圖書가 本校의 前身인 京城帝國大學으로 移管된 後에 出版된 것이며 内容은 前記 古圖書目錄과 同一한 體裁로 收錄되어 있다.

以上은 日帝時代에 만들어진 目錄들이다. 다음은 解決後에 整理한 狀況을 들어 보겠다.

b. 解放後의 整理狀況

① 奎章閣圖書 整理假目錄 카드. 約 30,000 枚

② 奎章閣圖書 朝鮮本索引. 4 冊.

西紀 1960 年 奎章閣 圖書中 朝鮮本 70,000 餘卷에 對한 가. 나. 다 音順索引임.

③ 奎章閣圖書 中國本索引. 1 冊.

西紀 1962 年 奎章閣 圖書中 中國本 70,000 餘卷에 對한 가. 나. 다 音順索引임.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는 1961 年 6 月 26 日부터 同年 10 月 26 日까지 4 個月에 걸쳐 臺帳에 依한 點檢을 實施하고, 同月 27 日부터 韓國本의 書名索引作業에着手하여 1962 年 12 月 29 日에 「奎章閣 圖書韓國本 書名索引」1 部 4 冊을 作成完了했다.

이 索引이 完成된 뒤 곧 이어서 中國本目錄의 索引作業에着手하여, 1963 年 1 月 18 日까지 「奎章閣 圖書 中國本 書名索引」1 部 4 冊을 完了하였다. 그러나 이들 目錄은 日本語索引에 代替하기 為하여 만든 것이므로 目錄이라기 보다는 一種의 우리말 音字索引이라 하겠다.

同圖書館에서는 奎章閣圖書의 再整理를 피하였으나 財政上 隘路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多幸히 하바드大學 燕京學會의 援助를 얻어 먼저 韓國古圖書의 再整理를 카一드式으로 目錄을 完成하였다. 이번에 整理된 韩國古圖書中에는 日帝時에 整理刊行된 三種의 圖書目錄에 收錄되어 있지 않은 數百種의 文集 拓本들도 包含되어 있어 奎章閣 圖書라는 이름으로 保管되어 있는 韩國圖書를 總整理한 셈이다. 아래에 利用者의 參考를 위하여 그 整理方式을 說明하여 둔다.

標目으로 採擇된 著者名은 目錄法의 原則에 따라서 著者の 本名을 採記하였다.

目錄의 記述은 現代目錄法에 따라 書名, 卷次數, 編著者名,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代, 卷冊數 版種, 冊의 크기를 記述의 重要內容으로 하고 이에 版種과 刊行年度를 鑑定하는데 도움을 주기 為하여 版式의 形態, 序,跋의

年代, 藏書記, 藏書印記 등과 함께 書誌上 重要視되는 事項을 註記하였다.

目錄의 形式은 二段式 方法을 擇하였으나 對照事項과 版式以下の 註記事項과의 明確한 區劃을 為하여 그 사이에 一行의 空白을 두었다.

刊行年度의 表示는 序跋의 年紀中에서 最後의 年紀를 取하여 記載하였으며 刊行年度를 全혀 알수없는 것은 [刊年未詳]이라 表示하였다.

古活字本의 區別은 確認된 活字名에 限하여 對照事項 다음에 「古活字本(丁酉字)」等으로 表示하였으며, 確實치 않는것은 다만 「古活字本(後期木活字)」等으로 表示하였다.

같은 圖書의 異版을 識別하는데 도움을 주기 為하여 版式의 表示에 版의 邊, 半張의 匡廓의 크기 行數,各行의 字數 및 版心에 있는 魚尾의 形態등도 記述하였다.

寫本인 경우에도 그것이 版에 올리기 為하여 만들어진 底本인 것은 目錄記入에 板匡의 形式을 表示하였다.

卷, 冊數는 同一圖書中 가장 完全한 것에 따라 表示하였으며 缺本, 落張이 있는것은 「所藏事項에 缺本, 落張 및 腐蝕된 部分을 註記로서 表示하였다. 또 같은 圖書라 할지라도 異版本, 完本, 零本, 裝釘이 다를것은 각각 그 記入을 달리하였다.

標目은 原則的으로 「東亞漢韓大辭典」에 表示된 音에 따라 한글로 韻字하였으며 頭文字의 音은 소리 나는대로 音에 따르고 慣習上 이미 俗音化 한것은 俗音에 따라 表記하였다.

圖書의 排列은 漢文字의 部首 및 字劃을 無視하고 標音의 가, 나, 다 順에 따라서 排列하였다.

圖書番號는 각각 目錄記入의 右側下端에 表示하였다. 이 番號는 金章閣圖書가 書架上에 配列된 位置를 指示하는 것이다.

以上 拙稿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를 土臺로하여 奎章閣의 由來와 藏書의 藏集 및 그 傳來의 大略을 概括하고, 同藏書를 為한 諸種 目錄에 對한 것을 說明하였다. 이제 奎章閣圖書를 為한 앞으로 할 事業을 提示하는 것으로서 끝을 맺고자 한다.

앞으로의 整理를 爲하여 繼續되어야 할 事業으로는 同圖書의 分類問題와 아울러 中國本 7 萬冊에 對한 目錄作成이다. 그런데 奎章閣圖書의 分類作業에 先行되어야 할 것은 分類表의 制定이라 하겠다. 同藏書가 이미 주어진 一連番號順의 圖書番號에 따라서 配列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만든 카드目錄으로서도 充分히 利用 할 수는 있으나, 꼭 分類別目錄을 要求하게 된다면 그에 앞서서 分類表가 決定되어야 한다. 漢籍分類를 爲하여 이미 提示된 分類法이 許多하나 모두 一長一短이 있어 韓國本과 中國本을 같은 體系 밑에서 處理할 수 있는 좀더 統一的이면서 標準이 될 만한 分類表가 아쉽다.

이 問題는 좀더 時間을 두고 各種分類表를 調查研究한 후에 決定 하여야 할 問題라고 본다. 그리고 中國本 7 萬冊에 對한 目錄作業은 記述目錄의 原則이 이미 세워져 있으므로 豫算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着手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司書課長>